

개인 정보보호 정책과 관리 방향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

라봉하 과장 /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이용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가능케 하면서 전자상거래·교육·여가 등 일상생활에 유익하고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반면,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오·남용, 음란·폭력정보의 범람, 익명성을 악용한 인권침해 행위 및 신종 사이버범죄 등의 정보화역기능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아누스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2000.1.1일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현행법”)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개인정보침해뿐만 아니라 음란·폭력 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 등 그동안 사회문제가 되어온 정보화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지난 2000. 12.15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법령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개정법”)”로 고쳐 시행한다.

개정법중에서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정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적용대상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일반법을 마련하였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 의무조항의 적용대상자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망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한정된 것을 개정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에도 각종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까지 확대하여 민간부문의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on-line 사업자뿐만 아니라 off-line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에서는 오프라인사업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다.

둘째, 개인정보처리 위탁과 영입의 양수 등에 따른 사업자책임을 강화하였다.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빈번한 교류가 일상적인 것이므로 정보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해당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탁받은 사람을 그 업무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소속직원으로 보아서 위탁받은 사람의 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전략적 제휴, 영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합병 등으로 사업자의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영업양도인과 양수인 등에 합병 등이 발생했다는 사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열람·정정 요구권의 행사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한층 확보하였다.

셋째, 소비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통제권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개인정보보호의 핵심은 소비자인 개인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권은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러한 동의를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를 신설·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거나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러한 권리 청구를 실현할 수 있는 contact-point를 마련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만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창구를 갖추도록 하였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권을 처음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서비스업체에만 보장하고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처음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서비스업체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 업체를 합병한 자 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넷째, 14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신설하였다.

어린이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개정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14세 미만의 어린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어린이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법정대리인에게 어린이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를 철회, 열람, 정정 등 접근 내지 통제권을 부여하여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다섯째, 개인정보관련분쟁을 신속·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는 대개의 경우 피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반면 그 파급효과는 대단히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법원이라는 사법기관에서 처리하기에는 전문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다. 이에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와 분쟁을 신속·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조정 결과에 대하여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였다. 이 위원회는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반드시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민간의 자율적 운영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향후 정책 방향

2000년에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정이 시행된 첫 해 입과 동시에 그 법을 전면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초를 다진 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법적 뒷받침하에서 2001년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방향을 간단히 알아본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사업자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예방대책, 침해시 구제방법 등을 적극 홍보·교육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금년 4월부터 8월 현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170기관 2만여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그 대상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엄격히 수행할 것이다.

이울러, 민간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협회가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마크제를 적극 지원·홍보할 예정이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발

전을 균형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이 입안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OECD, EU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 200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개인정보보호제도

◆ 배경

-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가 대폭 강화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개정되어 7월부터 시행
 - ※ 현재 동법 시행령 개정 작업중(7.5일 차관회의 상정 추진)이며, 동 시행령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7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 주요 내용

- 종래 인터넷쇼핑몰업자, 통신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만 사용되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학원, 교습소”에게도 부여
- 사업자간 합병,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사실, 합병회사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업자가 소비자의 회원가입(개인정보 수집)은 쉽게 하도록 하면서 회원탈퇴(개인정보 삭제)는 어렵게 하는 것을 금함
-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강화
-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피해구제와 분쟁을 쉽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설치